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# 양 산 시 의 회 의 장

2026년 3월 20일

양산시의회규칙 제120호

##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 중 “따라 의원”을 “따른 양산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 중 “주민”을 “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”으로, “구성되도록 하여야”를 “구성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“양산시의회”를 “양산시의회(이하 ‘의회’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위원회의 직능”을 “심사위원회의 직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하며”를 “하며 휴일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소속”을 “의회 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체없”을 “지체 없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

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2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, 긴급성,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·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, 국민권익위원회,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(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)를 자료실에 소장·비치하고 의회 누리집,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회부하고,”를 “회부하고, 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직원 보호 등)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,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, 사적 심부름,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-229(2025.12.8.)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함으로써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 구성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 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(안 제4조)
- 나.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외국정부 공식초청, 국제회의 참석, 자매결연 체결 등만 허용(안 제11조제2항)
- 다. 의장의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절차 신설(안 제11조제3항)
- 라. 모든 징계·환수 처분의원에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(안 제11조제4항)
- 마.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·조사 의뢰 의무화 (안 제12조제5항)
- 바.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및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금지 등 직원 보호 강화(안 제16조)